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14.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6월 2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2015. 7.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및 지도·감독, 해산사유(안 제5조 ~ 제7조)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평가원칙 및 평가의 종류(안 제10조 및 제11조)

-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진단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위탁(안 제15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기본법령이 없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 이에, 개별 조례¹⁾에 의거 영등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²⁾과 앞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본문 4장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 조직·인력 운용, 사업의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에서는 현재 영등포구에 설립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주민복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1)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4.10.16)

2)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기 관 명	설립일(등기)	출 연 금
영등포문화재단	2014.12.4	8,081백만원
영등포구장학재단	2015.4.21	501백만원

를 위한 기관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명기하고 위원회 소집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3항 중
“종료한 때에는” 를 “모두 마친 때에는”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이하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해제된” 을 “위촉 해제된” 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을 삭제하고
-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의” 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로 하고
-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9
----------	----------

제안년월일 : 2015. 7.

제출자 : 허홍석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명기하고 위원회 소집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3항 중
“종료한 때에는” 를 “모두 마친 때에는”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이하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해제된” 을 “위촉 해제된” 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을 삭제하고

○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의” 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로 하고

○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제3항 중
“종료한 때에는” 를 “모두 마친 때에는”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이하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해제된” 을 “위촉 해제된” 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을 삭제하고
-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의” 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로 하고
-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p>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구의원 제외). 다만, 구의회의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 영 제4조제4항제2호의 공무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재정국장을 말한다.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p>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1. ~ 5.(원안과 같음)</p> <p>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모두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원안과 같음)</p>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
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
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
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
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
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구의회
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
다.

⑤ (원안과 같음)

1. ~ 2 (원안과 같음)

⑥ (원안과 같음)

제9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원안과 같음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69 호
----------	--------

제출연월일 : 2015.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4.9.25)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및 지도·감독, 해산사유(안 제5조부터 제7조)
- 라.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마. 평가원칙 및 평가의 종류(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진단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위탁(안 제15조 및 제16조)
- 아.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반영)

- 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청렴의무 미준수 등에 대한 해촉요건을 정하여 위원회의 청렴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권고사항 : 조례안 제8조제5항 신설

⑤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 예산부서 검토 : 권고안에 대하여 수정 반영(④항에 포함)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5. 21 ~ 6. 10,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영등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계약평가, 출자·출연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영등포구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영등포구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구의원 제외). 다만, 구의회의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 영 제4조제4항제2호의 공무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재정국장을 말한다.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1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4. 구민만족도 조사

제1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재)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

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총괄부서와 협의 후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 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호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영진단 및 제11조제4호에 따른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의 활용) ① 구청장이 제11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